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나63689(본소), 2020나63726(반소) 판결
[손해배상 ·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나63689(본소), 2020나63726(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소1023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김세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옥
변론종결 2022. 4. 15.
판결선고 2022. 5. 2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소10239(본소),
2020가소118836(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8,192,026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9.부터, 나머지 14,192,026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설치 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3.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안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사기간은 2019. 3. 19.부터 같은 해 9. 19.까지로, 공사금액은 154,000,000원(= 공급가액 140,000,000원 + 부가가치세 14,000,000원)으로 정하여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8., 같은 달 19.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 설비 시공을 위한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방치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다. 위와 같이 시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기자재 구입 및 구조물 제작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여 원고는 41,000,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14,00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태양광 설비 시공을 위한 금융지원신청,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대관업무를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해태하여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고,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2019년도 금융지원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4,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14,192,02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각 증거에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에는 합의된 공사 기간 내 태양광 설비 완공,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대관업무, 금융지원신청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 수행에 관한 사항, 인허가 사항에 대한 원고의 책임 등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공사 기간 내에 원고가 관련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여 태양광 설비 공사까지 완공하는 것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② 비록 태양광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던 당심 증인 D는 2019. 3. 4.경부터 피고의 아들인 E와 사이에 금융지원신청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금융지원신청 자격이 있다고 전달하였고, 공사금액의 70%만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 기준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제 공사대금인 140,000,000원을 조달하려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 초기부터 금융지원신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이 법원의 안성시청 창조경제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공사 기간 내에 원고가 관련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여 태양광 설비 공사를 완공하고 금융지원신청까지 마치는 것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9. 3. 18.과 그 다음 날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공사기간 내에 태양광 설비를 완공하지도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년도 금융지원신청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가 방치한 불법 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안산시청에서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 인허가 관련 보완 통보를 별도로 신청자에게 하지는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민원사무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모든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안산시청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계약상으로도 원고가 인허가 관련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불법 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며,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지도 못할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불법건축물은 컨테이너 박스와 천막시설로서 손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에 고지를 하였다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기 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20. 3.경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인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을 제17,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완공 기한이 2019. 9. 19.인 사실, 피고가 2020. 6.경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2021. 1.부터 2021. 6.까지 태양광 사업으로 15,407,69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 2021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의 고정가격이 202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2019. 10.경부터는 피고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늦어도 피고가 주장한 2020. 1.경부터는 충분히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피고가 2020. 6.경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2020. 1.부터 2020. 6.까지의 매출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여 이로 인한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의 매출액이 15,407,6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14,192,02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인 2019. 3.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7.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손해배상으로 손해액 상당 14,192,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손해액 14,192,026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정, 판사 이재희, 판사 권현영